

- 신규(청년참여형), 재지정 -
2018년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

울산광역시는 청년 등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“2018년 마을기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18. 3. 29.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모집개요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8. 3. 29.(목) ~ 2018. 4. 13.(금)
- 모집대상 : 7개 정도[1차 신규(청년참여형) 마을기업 1, 2차년도(재지정) 마을기업 6]
 - ※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: 만39세 이하 출자자 50% 이상 참여(2018년 시범사업)
- 지원금액 : 신규(청년참여형) 50백만원 이내, 재지정 30백만원 이내
 - ※ 자부담 : 청년참여형(보조금의 10%이상), 재지정(보조금의 20%이상)
- 사업기간 : 약정체결일 ~ 2018. 12. 31.
- 접수처 : 해당 구·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-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2. 신청요건

- 사전 교육과정 등 필수이수 법인(단체)
 - 신규(청년참여형) 마을기업

-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*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(24시간) 이수 원칙(2018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)
- 단,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음
- 재지정(2차년도) 신청 마을기업
 - 5인*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
 - * 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

□ 기업성

-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
 -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-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
 -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-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
 -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%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(단,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% 이상을 적립함), 순이익의 50% 이상을 재투자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
-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
 - 법인이 아닌 경우, 구·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(市)로 추천 불가
 -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법인등록 완료한 단체(기업)만 공모 접수 가능

□ 공동체성

-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
-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(법인)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
-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

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

*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

-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, 소비자,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, 지역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

□ 공공성

-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
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여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의 합이 50% 이하여야 함

-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

*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%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

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)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
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
-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

□ 지역성

-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·운영 되어야 함
-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
-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

○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

-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*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

* 보조금의 20%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

* 단,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% 이상 자부담 원칙

- 마을기업 출자자(회원)의 70% 이상, 고용인력의 70%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,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
*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

*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'구(자치구), 읍·면·군은 읍·면 단위

* 지역주민 비율(70%) 산정방법 :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(4.2명→5명)

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(5.6명→6명)

* 구·군에서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)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.

* 단,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출자자(회원)의 50%이상, 고용인력의 50%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.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

(예시) 출자자(회원)이 7명인 경우 : 청년 4명 이상 & 지역주민 4명 이상

□ 참고사항(2차년도 재지정 지원시)

○ 1차년도(신규)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,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

- 지원대상 : 1차년도(신규)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

-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,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

□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

○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

○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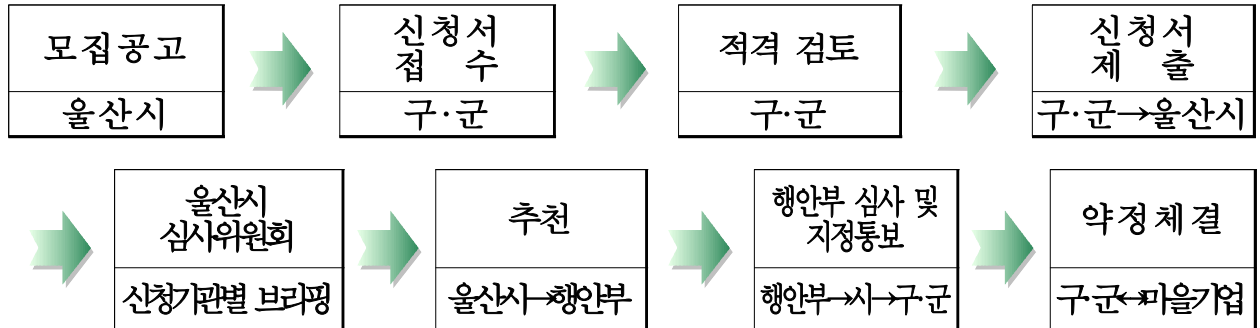
-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*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
 - * 토지 용도변경,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
-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
-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-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
-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
- 복지법인 등이 모 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(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)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
 - ※ 구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
- 타 기관·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
-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

□ 중복지원 제한

-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(고용부), 농촌공동체회사(농림부)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
 - 다만, R&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『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』은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
- 구·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
- 마을기업의 정체성,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(1차년 또는 1·2차년 최종지원 종료)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신청 가능
 - 다만, 고용노동부의 『사업개발비』와 같이 R&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

3. 사업의 심사 선정

□ 선정 절차



□ 심사항목 및 기준

○ 신규(청년참여형)

평가항목		배점	평가지표
공동체성	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·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· 출자자수(10인 이상 권장) 등
공공성 및 지역성	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출자비율, 지역주민 비율 등 ·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·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,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· 지역에서의 공헌 정도
기업성	상품의 시장성	10	·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, 시장경쟁력 등
	실현가능성	10	·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,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
	지속가능성	10	· 시장성, 공동체성,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
	판매가능성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·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
	차별성	5	·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,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		20	·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
가점부여분야		1 1 3 5 1 3 3 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·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·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·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· 여성기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·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· 빈집,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·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<p>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
총 계		100+α	

○ 재지정 (2차년도)

평가항목		배점	평가지표
공동체성	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▪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▪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
공공성 및 지역성	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▪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,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▪ 지역예의 공헌 정도(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) ▪ 이익의 적립·재투자 정도
기업성	그간 사업성과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 ▪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▪ 매출 및 이익 수준
	지속가능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의 발전가능성 ▪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	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▪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
총 계		100	

4. 제출서류

○ 신규(청년참여형) 지정 구비서류

- ① 마을기업 사업신청서(서식1)
- ② 사업계획서(서식2)
-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(서식3)
- ④ 조직형태 확인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*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

* 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

- ⑤ 정관,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⑦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

※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

- ⑧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확인서(구·군)
- ⑨ 교육이수 증빙자료 : 설립 전 교육 등 이수확인서
- ⑩ 기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증명서 사본,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(계약기간 명시) 사본,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

- 재지정(2차년도) 지원 구비서류
 - ① ~ ⑩ (신규 청년참여형 지정 구비서류와 동일)
 - ⑪실적보고서(서식4), ⑫정산보고서(서식5), ⑬재무제표 추가제출

5.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18. 3. 29.(목) ~ 2018. 4. 13.(금)
- 접 수 처 : 해당 구·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※ 구·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
구·군	담당부서	연락처
중구	경제일자리과	052)290-3343
남구	일자리정책과	052)226-3292
동구	경제진흥과	052)209-3508
북구	자치행정과	052)241-7277
울주군	지역경제과	052)204-1352

※ 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 : (재)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(283-7137)

관련서식

※ 주소/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

마을기업 사업계획서

1. 신청사업명 :

2. 사업 필요성

-
-

3. 사업개요

○ 추진주체 :

-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
(예) 귀농인이 80%,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

○ 사업내용 : 공공성,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

-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(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) 내용 기재
(예) 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·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
-

○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: 누구인지, 어떠한 일자리인지,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

○ 수익금 활용계획 : 수익금의 몇 %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, 지역사회 공헌 방안(금액환산)이 반드시 포함될 것

4. 기대효과

-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
-

(1쪽 이내)

5. 예산 계획

○ 사업별 예산 총괄

세부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비고 (산출근거)
		계	보조금	자부담	
계					

○ 비목별 예산 총괄

비목		사업비(천원)			내역	비고 (산출근거)	
		계	보조금	자부담			
경상 경비	인건비				*인건비		
	일반 운영비					홍보비	
						재료비	
						임차비	
						강사비	
						회의참석비	
						연료비	
						시설장비유지비	
						국내여비	
						*기타운영비	
경상경비 소계							
자본 경비	자산취득비						
	시설비						
자본경비 소계							
합계							

○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*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

1. A 사업

세부사업 내용	1) 필요성 2) 추진내용 3)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신청금액 산출근거	
기대효과	
추진일정	1)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

2. B 사업

세부사업 내용	1) 필요성 2) 추진내용 3)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신청금액 산출근거	
기대효과	
추진일정	1)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

b.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(2018년~2020년)

※ 해당 계획은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

○ 2018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기·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	
수입	매출	제품 1(a)			
		제품 2(b)			
		서비스 1(c)			
		기타사업(d)			
	매출합계(e) (= a+b+c+d)	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	제조업	원가율 %
		외주가공비	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상근			
		인건비비상근			
		보험료 등			
		감가상각비	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	
		수도광열통신비			
		세금등			
		임차료			
		광고선전비			
	기타				
	총지출(f)				
순이익(g) (= e-f)					

○ 2019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·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	
수입	매출	제품 1(a)			
		제품 2(b)			
		서비스 1(c)			
		기타사업(d)			
	매출합계(e) (₩ a+b+c+d)	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	제조업	원가율 %
		외주가공비	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상근			
		인건비비상근			
		보험료 등			
		감가상각비		장비,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	
		수도광열통신비			
		세금등			
		임차료			
		광고선전비			
	기타				
	총지출 (f) (₩ a+b+c+d+e+f)				
순이익(g) (₩ a-b)					

○ 2020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기·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	
수입	매출	제품 1(a)			
		제품 2(b)			
		서비스 1(c)			
		기타사업(d)			
	매출합계(e) (f= a+b+c+d)	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	제조업	원가율 %
		외주가공비	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(상근)			
		인건비(비상근)			
		보험료 등			
		감가상각비	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	
		수도광열통신비			
		세금등			
		임차료			
		광고선전비			
	기타				
	총지출 (g)				
순이익(D) (E=F-G)					

1. 마을기업의 특성

○ 홍보·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

- 예> 국토마트에 연 3,000개 납품 계약,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

○ 1차년도 사업의 특징(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) * 1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

- 예> 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,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

○ 1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* 1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

- 예>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,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‘지역 유희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’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

○ 사업장 위치도(관련사진)

--	--

※ 임의 항목 삭제 금지,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출자금액 (원)	역할 (업무)	대표자 와의 관계	정보제공 동의여부	사업계획 동의여부
1								□	친필서명
2								□	친필서명
3								□	친필서명
4								□	친필서명
5									친필서명
6									친필서명
7									친필서명
8									친필서명
9									친필서명
10									친필서명
합계									

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, 출자금액,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.

2018. . .

신청자(법인 또는 단체) 대표자 :

(인 또는 서명)

마을기업 실적보고서

I. 사업개요(요약)

법 인 명		마을기업명	
사 업 명			
사업기간	20 ~ 20	사업장 소재지	
사 업 비	총 천원	보 조 금	천원(비율%)
		자 부 담	천원(비율%)
사업목적	○ (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) - -		
사업 내용	○ (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) - -		
지역사회 공헌내용	○ (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, 금액 환산) - -		
추진실적 및 사업성과	○ 일자리 창출 00명(상시근로자 00명, 선택적 근로자 00명) ○ 총 매출액 : 000 천원 ×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- 감말랭이 판매 : 000천원 - 감 쥬스 판매 : 000천원		

II.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

세부사업	사업계획	추진실적	사유
감말랭이 판매	하나로 마트 5천개 판매 온라인판매 5천개 판매	국토 마트 : 3천개 판매 온라인 판매 - g마켓 : 1천개 판매 - 옥션 : 3천개 판매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납품 : 2천개	하나로 마트 입점 불가

< 작성요령 >

-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·도식화하여 작성
(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)
-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

III. 사업추진성과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○ 자립경영 가능성,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○ 지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
--

IV. 지역사회 공헌 성과

-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
 - 일시, 장소, 금액(환산액) 등 자세하게 기술
-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예상되는 효과 분석
- 사진,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

V. 자체평가

-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(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)
-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,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
-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

VI. 건의사항

VII. 추진사업 성과물(자료 목록)

번호	자료유형	성과물 명칭	수량	비고
1	보고서	-----		
2	발간책자	-----		
3	프로그램			
4	포스터			
.	.			
.	.			

<자료유형>

- 보고서, 발간책자
- 사업 관련 영상, 사진 등 미디어 자료
- 뉴스레터, 리플렛, 기타 사업 홍보물
- 언론보도 자료 등

I. 사업비 집행현황

1. 정산총괄표

(단위 : 원)

구분	예산액(총사업비)Ⓐ	집행액Ⓑ	집행잔액ⒸⒹ	비고
계				
보조금				
자부담				

II. 보조금 집행 현황

1.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(나라도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)

(단위 : 원)

통장 인출 일자 (순)	인출액	지출내역								지출 결의 번호	비고 및 증빙 유형	
		사업 (세부 분야)	비목	내역	지출 일자	지출액						지급 처
						계	공급가액	부가세	부가세 대체입금일			
계												
<예시> 2018-09-01	330,000	판로 개척	인쇄비	홍보전 단체작	2018-09-01	250,000	227,270	22,730	2017-09-30		18-01-01	세금 계산서
			사무 용품비	전산인 크구매	2018-09-01	60,000	54,540	5,460	“		18-01-02	신용 카드
			여비	시장조 사여비	2018-09-01	20,000	20,000	-			18-01-03	출장 보고서
<예시> 2018-09-03	500,000	제품 생산	재료비	배추 구매	2018-09-03	500,000	500,000	-			18-03-01	판매 확인증

※ 작성방법

- 1)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
- 2) 지출내역은 사업(세부)분야 지출액을 비목별·일자별로 나누어 기재
- 3) 보조금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입금 조치)

*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

4)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부여

- 지출결의서(18-10-01) 월별(01,02,03...), 일자별(01,02,03...), 일련번호(01,02,03...)

5) 비고 : (세금)계산서, 법인 신용카드(전표)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, 재료판매 확인증,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

2.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

(단위 : 원)

사업(세부내용)	비목	예산액(₩)	지출액(₩)	집행잔액 (₩)	발생사유

※ 발생사유 : 사업계획변경, 사업취소, 지급사유 미발생, 집행잔액, 이자 등 기재

III. 자부담 집행 현황

1. 지출일자별 집행내역(나라도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)

(단위 : 원)

통장 인출 일자 (순)	인출액	지출내역									지출 결의 번호	비고 및 증빙 유형
		사업 (세부 분야)	비목	내역	지출 일자	지출액				지급처		
						계	공급가액	부가세	부가세 대체입금일			
계												
<예시> 2018-0 9-05	470,000	판로개척	인쇄비	책자 제작	2018-0 9-05	330,000	300,000	30,000	2018-09- 30		18-0 5-01	세금 계산서
			사무 용품비	토너 구매	2018-0 9-05	110,000	100,000	10,000	"		18-0 5-02	신용 카드
			여비	시장조 사여비	2018-0 9-05	30,000	30,000	-			18-0 5-03	출장 보고서
<예시> 2018-0 9-08	300,000	제품생산	재료비	콩구매	2018-0 9-08	300,000	300,000	-			18-0 8-01	판매 확인증

- 1) 자부담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
체입금 조치)
- 2) 비고 : (세금)계산서, 법인 신용카드(전표)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, 재료
판매 확인증,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

2.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

(단위 : 원)

사업(세부내용)	비 목	예산액(₩)	지출액(₩)	집행잔액(₩)	발생사유

※ 발생사유 : 사업계획변경, 사업취소, 지급사유 미발생, 집행 잔액, 이자 등 기재

IV. 매출액 현황

(단위 : 원)

총매출액 ('18.0월~12월)	수익금						
	계(₩)	투자금 적립(₩)	집행액(₩)				
			소계	재투자	배당	지역공헌	기타